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86
----------	------

발의연월일 : 2025. 2. 7.

발의자 : 김태호 · 조경태 · 이인선

엄태영 · 김건 · 박충권

강명구 · 서천호 · 한기호

김성원 · 김종양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모든 학교에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조리 종사자 관리 등을 위해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다수의 학교가 영양교사 1명만 배치하고 있어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나 1일 2회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단 1명의 영양교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도하여 학교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 맞춤형 영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생 략) <u><신 설></u>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의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둔다.
② · ③ (생 략)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 ----- ----- --.